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**

※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된 「수입식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」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식품 위예사범의 처벌 규정 강화

- 광우병·탄저병·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이나, 마황·부자 등 독극물을 사용한 식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도 국내에서 제조·가공한자와 같이 징역 3년 또는 1년 이상에 처하도록 함.
- 고의적으로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유독·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·수입·판매한 자의 경우 최소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고 판매금액 2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.

<처벌 규정 개선안>

현행	형량	개선권고	
		개선권고	형량
○ 전염병·독극물 사용식품 제조·가공·조리한자 (식품위생법93조)		○ 전염병·독극물 사용식품 제조·가공·조리· 수입한자	
▶ 광우병, 탄저병, 가금 인플루엔자 동물	징역 3년이상 및 2~5배 벌금	▶ 좌동	좌동
▶ 마황, 부자, 천오, 초오, 백부자, 섬수, 백선피, 사리풀	징역 1년이상 및 2~5배 벌금	▶ 좌동	좌동
○ 유독·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·수입·판매한 자 (식품위생법94조)	징역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, 둘다 병과 가능	○ 유독·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·수입·판매한 자	징역 7년이하 또는 1억원이하 벌금, 둘다 병과 가능
		▶ (신설) 단, 인체 위해정도가 심한 물질인 경우 ※ (예) 수은·납 등 중금속, 옥시테트라사이클린, 엔도셀판, 멜라민, 타르색소 등	최소 징역 1년 이상 및 2배이상 벌금 (1억원 범위내)

□ 원산지 표시 의무강화

- 최근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막걸리와 같은 **주류(酒類)**나 한약방에서 조제하는 **한약**의 경우,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쌀이나 한약재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는데 그 **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** 하도록 함.
- **쌀·김치**의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현행 100㎡이상 음식점에서 **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도록 권고**함.

<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>

대상 품목	내 용	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음식점
쇠고기	쇠고기를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음식	모든 음식점 (일반음식점, 휴게 음식점, 위탁급식소, 집단급식소)
돼지고기, 닭고기	구이용, 탕용,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·제공하는 음식	
쌀(밥류)	밥으로 조리하는 것	100㎡ 이상인 음식점, 휴게음식점, 위탁급식소
배추김치	반찬으로 제공하는 것	

□ 식품류 면세통관 엄격이 제언

- 수입 보따리상이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고 휴대 반입하는 면세통관 식품류에 대한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·식품위생법 등 **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있는 보따리상 명단을 관세청으로 통보**하도록 하여 이들의 식품류 면세통관을 엄격히 제한함.
- **휴대 반입 식품류에 대한 모니터링 수거·검사횟수**를 현행 **월 2회**에서 **주 2회**로 늘려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도록 함.
- ※ 수입 보따리상 규모는 약 4,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1주일에 평균 2~3회 한국과 중국을 왕래함(인천·평택·군산항을 주로 이용).
- ※ 주요 반입물품은 각종 농산물, 한약재, 주요 반출품은 의류, 화장품 등임.

□ **‘수입신고 대행업종’ 신설, 행정관청의 사전·사후관리 강화**

- 현재 신고업으로 되어 있는 ‘식품 등 수입판매업’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고, 일정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수입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‘식품 등 수입신고 대행업종’ 신설하여 행정관청의 사전·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.

□ **행정처분 게시문 규격 통일, 부착상태의 사후관리 철저**

-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부착하는 행정처분 게시문의 경우 통일된 서식과 기준이 없어 처분청마다 제각각인 실정이었는데, 행정처분 게시문의 크기를 확대하는 등 규격을 통일하고 부착상태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함.
 - 규격 및 색상 : 30cm × 42cm, 바탕(황색), 테두리(적색, 폭 5cm)
 - 작성 및 부착방법 : 업소명(업주), 소재지, 위반명, 처분기간, 위반 내용을 기록하여 정문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